## - 국세청 소득금액 정보연계 등 관련 -등록(거소)외국인 직업, 연간소득 및 재학시항 신고 안내

등록외국인의 연간 소득금액 신고 시 필요한 '소득금액증명' 제출을 생략하는 등 관련 절차가 간편해집니다!

## ①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

- (신고 대상)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\*을 가진 외국인
  - \* 주재(D-7), 기업투자(D-8), 무역경영(D-9), 교수(E-1)~선원취업(E-10), 거주(F-2), 재외동포(F-4), 결혼이민(F-6), 방문취업(H-2)
- (신고 시기) 각종 체류허가 및 신고 시\*
  - \* 외국인등록(거소신고), 체류자격 변경허가, 체류자격외 활동허가, 근무처변경·추가 허가(신고), 체류자격 부여허가, 체류기간 연장허가 / 직업 변경 시
- (신고 방법)
- ① <u>직업</u> :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「외국인 직업 신고서(별첨1)」 작성하여 제출
- ② <u>연간 소득금액</u>: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「통합신청서(신고서)」 '연 소득금액'란에 연 소득금액 작성하여 제출 (단, 재외동포(F-4) 자격은 연 소득금액 기재 불요)
  - ※ 국세청과 정보연계를 통해 소득금액증명 제출 생략

## ② 재학사항(초, 중, 고) 신고

- (신고 대상)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등록(거소) 외국인
- (신고 시기)
- (공통) 초·중·고교 최초 입학 또는 재학 여부 변경(상급학교 진학 포함) 시 15일 이내
- (각종 체류허가) 외국인등록(거소신고), 체류자격 변경허가, 체류자격외 활동허가, 근무처 변경·추가허가(신고), 체류자격 부여허가,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
- (신고 방법)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「외국인 초·중·고 재학사항 신고서(별첨2)」및 재학증명서 등 재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
  - ☞ 자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의 「체류자격별 안내매뉴얼」을 참고하시거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(☎1345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